

2017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2017. 7.31(화)14:00 제1회의실]

□ 심의안건

1. 제1의 안: 기금 용도변경(안) 심의
2. 제2의 안: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3. 기타
 - 가.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 사업예산 내역 변경(안) 심의

기 획 처

2017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	2017.7.19.
재적위원 정수	11명

1. 일시 : 2017. 7.31(월) 14:00

2. 장소 : 협성대학교 본관 제1회의실

3. 참석인원

가. 참석자: 9명

① 위 원 장 : 이후천

② 참석위원 : 고재모, 이창호, 박명래, 윤정노, 강세희, 정재욱, 이천길, 정민철

나. 불참자: 2명

① 위원: 박명래, 조나단

4. 회의안건

가. 제1의 (안): 기금 용도변경(안) 심의

나. 제2의 (안):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다. 기타

①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 사업예산 내역 변경(안) 심의

5. 회의내용

가. 제1의 (안): 기금 용도변경(안) 심의

◦ 이후천위원장: (위원장 개회 선언)

전체 위원 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고 2명의 위원이 불참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제1의 (안)은 기금 용도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심위 위원이면서 기획처장이신 고재모처장께서 기금 용도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재모 위원 : 금번에 상정한 기금 용도변경(안)은 2017회계연도 제1차 회의 때 추가경정 예산(안)과 연관된 내용임으로 함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금 용도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직원의 명예퇴직 시행, 교직원 급여 중 공무원 보수 인상분 반영, 교원 책임시수 변동에 따른 초과강의로 증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건축기금 중 15.8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용도 변경을 하고자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 또한 우리대학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부응하여 ACE+(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사업 신청을 하고자 하며, 이에 대비한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건축기금 2억원을 추가 인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2017학년도 건축기금 인출금액은 본예산에서 승인된 13.58억원과 금번 15.85억원을 포함하여 총 기금인출액은 31.43억원입니다.
- 적립금은 「사학학교법 제32조의 2(적립금) 제3항」에 따라 적립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 금번 인출 승인요청한 건축기금 중 15.85억원을 장학기금으로 전환하여 비등록금 회계 교내장학금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비등록금 회계 장학금 예산에 배정된 금액만큼 등록금회계의 교내 장학금 예산에서 15.85억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부족한 각종 인건비 예산에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1차 때 인출기금 13.58억원과 금번에 15.85억원을 교육재정에 투입하는 경우 기금투입에 따른 교육비환원율은 기존의 145.5%에서 153%로 향상되리라 예상됩니다. 참고로 전국 대학의 교육비환원율 평균은 169.9%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포함한 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민철 위원 : ACE+ 사업 준비 예산이 2억원으로 충당이 가능한지요?

고재모 위원 : 교과과정 개발이라던지, ACE+ 사업 준비에 필요한 각종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각 부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금번 건축기금에서 인출하고자 하는 2억원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시설적인 측면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위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각기 다른 위치에 흩어져있는 교육혁신원 내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창의융합원, 교육질관리센터를 한 곳으로 집중배치함으로써 교수학습연구와 각종 연구활동에 있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효율적인 연구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입니다.
- 따라서, 교육혁신원 산하의 모든 센터들을 경영대학 1층에 배치하고 각 센터의 기능에 맞는 시설을 리모델링하도록 함으로써 각 센터의 연구활동 지원사업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ACE+ 사업 실사 대비를 위한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ACE+ 사업과 관련한 기타 비용은 각 부서별로 본 예산에 배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홍기국 위원 : 제1의 (안)인 기금 인출 용도 변경(안)의 추경 편성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는 고재모처장께서 설명해 주셔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강세희 위원 : 그렇다면, ACE + 사업 건축비는 좀 더 세부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는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모 위원 : ACE+ 관련 사업비용 2억원은 첨단강의실 설치, 관련 기자재, 일부 시설 개선비용 등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 만일, ACE+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을 받는 경우 연간 6억여원의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비환원을 개선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본교는 현재 진행 중인 IPP 사업을 포함하여 ACE+ 사업, 일자리센터 사업 신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천위원장: 제1의 (안)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동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철위원 동의, 윤정노위원 재청)

- 정민철위원과 윤정노위원의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 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예” 하다)

- 제1의 (안) 기금 용도 변경(안)에 관한 사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제2의 (안):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이후천위원장: 다음은 제2의 (안)으로써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처장께서 제2의 (안)과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모위원: 제2의 (안)은 제1의 (안)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제1의 (안) 설명한 것으로 같음하도록 하겠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천위원장: 고재모처장 말씀대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없으시면 동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노위원 동의, 정민철 위원 재청)

-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모두 “가” 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예” 하다)

- 제2의 (안)인 2017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타안건

①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 사업예산 내역 변경(안) 심의

이후천위원장: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사업예산 내역 변경(안)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재모처장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재모 위원 : 현재 진행중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 사업과 관련된 일부 예산 내역의 변경이 예상됩니다. 당초 IPP사업 신청 당시에 책정된 예산의 관항목 중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사업비 수입 및 지출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업 결손에 따른 계절학기 시행 등에 필요한 강사료 항목 등의 증액이 일부 필요성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다른 항목들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 이에 고용노동부 및 산업인력공단의 허가를 받아 일부 관항목의 조정이 있을 시 이의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후천위원장: 제3의 (안)인 고용노동부 지원 IPP(장기 일학습병행제) 사업예산 내역 변경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동의, 재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철위원 동의, 윤정노위원 재청)

- 동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모두 “가” 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위원 “예” 하다)

고재모 위원: 기타 의견으로 회의 명예퇴직자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사회 승인금액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금액이 다르게 되는 경우에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재개 의하기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정금액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전체위원들의 지면 동의를 얻어 처리 하였으면 하는 것이 어떨지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동의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후천위원장: 고재모처장께서 명예퇴직금 인출과 관련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과 이사회에서 결정한 금액이 다른 경우 이사회의 결정금액을 전체 위원들의 지면동의를 얻어 처리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기타의 견입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철 위원: 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명예퇴직금관련 인출금액이 이사회에서 변경 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전체 위원들에게 지면 통지하도록 하고, 회의자료 사실확인인 총학생회장인 윤정노위원이 대표로 사실확인을 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이후천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정민철위원님의 위임동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재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길 위원: 재청합니다.


이후천 위원장: “가” 하시면 “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시간 14:50)


위원장 이 후 천 (인) 

위 원 고 재 모 (인) 


이 창 호 (인) 

홍 기 국 (인) 

윤 정 노 (인) 정 노 

강 세 회 (인) 

정 재 욱 (인) 

이 천 길 (인) 

정 민 철 (인) 